

# 새로운 경기 보도 자료

보 도 일 시

2018. 8. 31.(금)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1	○	X	과장 : 김영호 (031-8008-5440) 팀장 : 김연기 (031-8008-5456) 담당 : 김리나 (031-8008-5464)

## ,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경기도, 9월 14일까지 2019년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수요조사
- 지원자격 완화 등 지침변경으로 지원대상 확대

경기도는 농업용 비닐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2019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9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품목은 생분해성 멀칭제,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잡초매트 등으로 친환경 인증 및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생분해성 멀칭제는 사용 후 토양에서 생분해되며,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은 일반 필름보다 사용기간이 길어 폐비닐 발생 감소효과가 있다. 잡초매트의 경우 농지에 피복 시 제초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전 효과가 있다.

도는 내년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에 총 8,66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는 생분해성 멀칭제 170원/m<sup>2</sup>, 장기성코칭하우스 필름 9,000~10,000원/m<sup>2</sup>, 잡초매트 320원/m<sup>2</sup> 이다. 보조비율은 50%로, 나머지 50%를 자부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9월 14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참고자료>

- 목 적 :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를 지원하여 농업환경 보전
- 지원품목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2019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

변경내역	현행	개정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안농업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li> <li>※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및 농업경영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li> </ul>
지원단가 적용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분해성 멀칭제 : 220원/m (품목별길이 기준)</li> <li>- 잡초매트 : 320원/m (품목별길이 기준, 고정핀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m<sup>2</sup> (농지면적 기준)</li> <li>- 잡초매트 : 320원/m<sup>2</sup> (농지면적 기준, 고정핀 포함)</li> </ul>
지원자격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잡초 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예·특작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농식품부 고시 제 2016-180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li> <li>- 친환경인증농가만 지원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예·특작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농식품부 고시 제 2016-180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li> <li>※ 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 이전 고시에서 지정된 내재해형 규격 시설도 지원 가능</li> <li>- (삭제)</li> </ul>